

外國의 林業稅制*1

朴 泰 植*2

1. 林業種制 策定の 傾向

一般的인 稅制의 窮極的인 目的은 國家財政의 財源을 얻기 위한 것이므로 林業稅制도 이 目的範疇를 벗어나지는 않지만 林業稅制 策定에 있어서는 林業의 特殊性을 考慮하여 課稅對象과 稅率을 適正하게 함으로써 林業者의 林業經營上의 負擔을 덜어주어 林業分野에서의 資本의 流出을 防止하고 外部에서의 資本의 流入을 꾀하는 政策을 쓰고 있다.

2. 林業稅制의 構成

林業稅의 課稅對象(過程)은 4가지이다.

- (1) 林地의 取得維持: 登錄稅, 取得稅, 資產稅
- (2) 林木生産賣却: 山林所得稅(個人), 法人稅(法人)
- (3) 林木伐採와 木材生産: 伐採稅, 木材去來稅, 事業稅
- (4) 林地의 賣却과 相續: 讓渡稅, 相續稅, 贈與稅.

3. 日本의 林業稅制

(1) 山林所得稅의 變遷

- 1) 1887(明治 20)年 所得稅을 創設하여 總合課稅 方式과 累進稅率適用(山林所得을 經常所得과 合算)
- 2) 1920(大正 9)年 林業所得을 他所得에 分離 課稅
- 3) 1926(昭和 1)年 山林所得의 分離 5分 5乘法 適用(山林所得을 다른 所得에서 分離하여 山林所得의 1/5의 額에 稅率을 곱하여 5乘하여 稅額 算定).
- 4) 1940(昭和 15)年 分類所得稅와 總合所得稅의 二元的 稅制適用(山林所得의 一定額을 定하여 그 以下와 以上에 對하여 稅率을 달리하여 課稅하며 總合所得稅는 山林所得이 一定額以上인 경우 分類所得稅와 더불어 二重課稅)
- 5) 1947(昭和 22)年 總合半額課稅制度 適用(山林所得의 1/2을 普通所得으로 하여 他所得에 總合하여 課稅)
- 6) 1950(昭和 25)年 5年間의 平均金額課稅方式 採擇(山林所得의 變動性을 考慮하여 5年間의 平均課稅)
- 7) 1953(昭和 28)年 總合 5分5乘方式 採用(山林所得의 5/1額을 他所得에 合하여 稅率을 定하며 山林所

得에 해당하는 稅額의 5倍를 한다.)

8) 1954(昭和 29)年 分離5分5乘法의 復活(山林所得을 他所得에서 分離하여 山林所得의 1/5에 稅率을 곱하고 5倍한 것은 稅額이 된다)

(2) 山林所得의 計算

山林을 買入하여 5年以內에 伐採讓渡할 경우에는 山林所得으로 看做하지 않고 事業所得 또는 讓渡所得으로 取扱한다.

山林所得 = 當年の 山林收入 - {必要經費(植栽費 + 取得費 + 管理費 + 伐採費 + 運搬費 + 其他 讓渡經費) + *山林計劃 特別控除 + 山林所得 特別控除(40萬엔)}

* 山林計劃 特別控除: 收入金額에서 伐採費, 運搬費 其他의 讓渡經費등을 控除한 額의 20%)

山林所得稅 = {山林所得 - (配偶者控除 + 扶養控除 + 社會保險 + 生命保險)} × 1/5 × 稅率 × 5

(3) 林業의 法人稅

1) 山林施業計劃의 認定을 받고 있는 青色申告法人이 實施하는 擴大造林에 관한 植栽費, 治山工事費等은 初年度 1/3을 特別償却(所得計算上 損金算入)할 수 있다

2) 計劃造林準備金

山林施業計劃의 認定을 받은 青色申告法人이 實施하는 伐採 또는 讓渡에 의한 山林所得計算에 있어서 將來의 擴大造林費用에 充當하기 위한 計劃造林準備金を 積立할 경우 一定額(약 37만엔)을 限度로 損金算入할 수 있다.

(4) 相續稅

林地, 林木을 別途로 現時價로 評價하여 相續稅를 課稅하며 林木의 課稅價額은 評價額의 85%로 한다. 또 保安林, 砂防法 및 國立公園法의 適用을 받는 林木은 林木時價의 6~7割 控除(但 水源涵養林은 2~4割, 土砂流出防備林은 2~7割 控除함)相續稅는 相續財產 評價額에서 一定額을 控除(報礎控除 400萬圓 + 相續人數 × 80萬圓 + 配偶者 × 200萬圓)한 殘額에 對하여 10~70%까지의 稅率을 適用하며 一般的으로 5年間 分納을 할 수 있고 相續財產中 不動產의 價額의 比가 總額의 1/2 이상인 경우에는 10년까지 延長할 수 있다.

(5) 木材去來稅

*1 Forest Taxation in Foreign Countrys

*2 Tae Sik Park, 서울大學校 農科大學 College of Agricul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課稅對象은 素材이며 薪炭材, 표고골목 등은 除外되지만 國·公有林 生産素材에도 課稅된다. 納稅義務者는 素材를 처음 買受하는 사람이며 課稅評價는 去來가 이루어지는 山元價格으로 하는데 稅率은 課稅評價額의 2/100~3/100이다.

(6) 固定資産稅

林地, 家屋등에 對해서 課稅되나 保安林, 山林組合의 事務所, 倉庫등은 非課稅이다.

(7) 事業稅

個人, 法人이 營爲하는 事業의 所得 또는 收入金額을 대상으로 하여 課稅하는 收益稅이며 林業所得에 대해서는 個人 法人을 莫論하고 課稅하지 않는다(林業과 더불어 製材 製紙등의 製造業을 하는 경우라도 林業部門에 대해서는 課稅하지 않는다. 但 伐採만을 하는 木材 伐出業에는 事業稅를 課한다.)

(8) 不動產取得稅

林地, 林木등의 不動產取得價格에 대하여 課稅하나 保安林用 林地取得에 대해서는 課稅하지 않는다.

(9) 登記稅

山林등의 不動產所有權의 取得 交換을 위한 登記에 대한 課稅이며 保安林整備臨時措置法등 國家에서 권장하는 方針에 의하여 所有權의 取得 또는 交換을 하였을 때에는 登記稅를 免除한다.

4. 美國의 林業稅制

美國의 山林에 대한 稅制는 財產稅(地方稅)가 主宗을 이루고 있으며 各州 또는 郡에 따라 相當히 相異한 課稅方法을 取하고 있다.

(1) 林地稅……林地評價額에 대해서 每年課稅

(2) 山林從價稅……林地+林木의 價格에 따라 每年課稅)

(3) 收穫稅……林木에 대한 課稅는 收穫時까지 延期하였다가 伐採收穫 때 課稅

(4) 伐採稅……稅收를 目的으로 林木伐採時 一定額을 課稅

5. 캐나다의 林業稅制

國有林, 州有林中 伐採權을 設定한 山林, 私有改良用材林, 天然放置林, 經營計劃林 등의 종류에 대하여 各各 相異한 課稅方法을 取하고 있으며 州·地方에 따라 課稅內容이 多様한데 主要 課稅種類는 다음과 같다

(1) 財產稅……改良用材林은 山林價額의 1.5%課稅 天然放置林은 山林價額의 3%, 經營計劃林은 山林價額

1%의 課稅

(2) 山火防止稅……에이카당 5~6센트 課稅

(3) 木材販賣稅……판매가의 2~3% 課稅, 그런데 인정한 伐採機械기구를 이용하여 木材生産을 할 때에는 免除

(4) 教育稅……教育稅를 財產價에 따라 課할 때에는 林地稅는 없다.

(5) 伐採收益稅……伐採收益의 1%

6. 其他外國의 林業稅의 減免措置

(1) 브라질

1) 法人

法人은 納稅金の 50%까지 前年度 植木한 證明으로 免除한다.

2) 個人

課稅對象인 所得額의 50%限度에서 前年度 實行한 植木費用을 控除하여 所得稅를 課한다.

3) 公社

公社가 土地를 購入하여 植木한 후 희망자에게 賣却分讓하면 購入者는 植木法에 따라 所得稅가 輕減된다. 또 公社가 植木을 講負맡아서 實施하고 植木을 한 사람에게 所得稅輕減手續을 한다.

(2) 英國

1) 山林投資金の 損金算入

再造林, 保育管理費등의 所要經費를 다른 所得源에서 控除하여 課稅한다.

2) 山林所稅의 賦拂方法 適用

單位面積當 一定額의 山林所得稅를 年拂하도록 하여 山林所得에 累進稅率이 適用되지 않도록 한다.

3) 佛蘭西

1) 登錄稅 免除

造林地의 移轉, 相續登錄稅의 75% 免除한다.

2) 土地稅의 免除

幼齡林木을 保護하기 위해 30年間 免除한다.

3) 所得稅輕減

造林作業員의 所得稅를 輕減한다.

(4) 핀란드

無林木地 또는 疏林地의 造林에 대하여는 15~25年間 稅金을 免除한다.

(5) 스웨덴

林木代金の 40% 혹은 原木代金の 20%까지 銀行特別口座에 豫入케 하고 2年後 造林費가 필요하여 引出할 때까지 그 收入에 대하여 課稅하지 않는다.